#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938

발의연월일: 2021. 6. 21.

발 의 자:전재수·이장섭·양경숙

유정주 • 신영대 • 김정호

고영인 • 전용기 • 이병훈

민홍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 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의 장기 확산 및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·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대면 납부 수단뿐만 아니라 비대면 납부 수단의 확충이 필요함.

이에 지방세의 납부 수단으로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23조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 제목 중 "신용카드"를 "신용카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신용카드로"를 "신용카드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"이라 한다)으로"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"신용카드로"를 각각 "신용카드등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신용카드에"를 "신용카드등에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 <u>신용카드</u> 에 의한 지방세	제23조( <u>신용카드 등</u> 에 의한 지방
납부) ① 납세의무자는 「지방	세 납부) ①
세기본법」 또는 지방세관계법	
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	
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	
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	
납대행기관(이하 "지방세수납	
대행기관"이라 한다)을 통하여	
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.	신용카드, 「전자금융거래법」
	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
	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
	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
	등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
	<u>등"이라 한다)으로</u>
② 납세의무자는 「지방세기본	②
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	
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	
을 통하여 <u>신용카드로</u> 자동납	<u>신용카드등으로</u> -
부할 수 있다. 다만, 납부기한	
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	
다.	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<u>신</u>	③ <u>থ</u>
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	<u>용카드등으로</u>
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	
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신용카드에</u> 의한 지방세 납	⑤ <u>신용카드등에</u>
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	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